

## 「2019년도 제2차 해외인프라·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대상사업」 모집 공고

### 1. 목 적

- 해외인프라·도시개발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지원

### 2. 신청자격

- 해외건설촉진법령상에 따른 해외건설업자\*

1.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
2. 「전기공사업법」에 따라 공사업(工事業)의 등록을 한 자
3.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
4.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
5. 「건축사법」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
6. 「기술사법」에 따라 건설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
7.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
8. 해외공사의 수주(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)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
9. 「대외무역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받은 자
10. 해외공사의 개발(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)사업을 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
11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
12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에 따라 등록된 측량업자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된 수로사업자
13. 「주택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

\*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,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을 신고하고,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

### 3. 신청 대상 사업

- 해외건설업자가 사업주로 개발·건설·운영관리에 참여하는 해외 인프라·도시개발사업(『해외건설촉진법』 제2조)
  - \*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1조제1항의 사회기반 시설 또는 이와 연관된 사업,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 제1항 제2호의 도시개발 사업, 기타 에너지·건설 관련 플랜트사업 등 해외에서 수행되는 사업

### 4. 지원규모 : 사업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추후 확정

- \* 금회 지원계획 : 건당 5억원 이내 예정

### 5. 추진일정

- 사업모집 : '19. 4. 24(수) ~ '19. 5. 14(화)
- 심사 및 선정 : 세부 일정은 개별 통지

### 6. 심사기준 : 붙임 1 및 붙임 2 참조

### 7. 서류접수

- 제출서류
  - 가.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지원 신청서 1부 (서식 제1호)
  - 나. 사업제안서 2부 (서식 제2호 또는 제3호)
  - 다. 서약서 1부 (서식 제4호)
  - 라. 타당성조사 정보공개 동의서 1부 (서식 제5호)
  - 마. 타당성조사 요청내역서 1부 (서식 제6호)
  - 바.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 - 사.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상태표 사본 1부
  - 아.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

- 접수처 :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 사업총괄실  
 (전화 : 02-6746-7367 / 7370)
  - (07326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(Three IFC 50층)
  - E-mail : sm.hur@kindkorea.or.kr(허승민 과장),  
 mj.kim@kindkorea.or.kr(김민정 팀장)
- 접수방법 : 우편 및 방문 접수 모두 가능
  - \*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기간 내에 도착한 서류만 인정함

## 8.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

- 해외인프라·도시개발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 
 (타당성조사 비용투자) 및 건설 수주 외교활동 등 지원

## 9. 유의사항

- 타당성조사 지원 신청기업은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본타당성조사 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,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공동진출 사업 또는 중소·중견기업 진출 사업인 경우 가점을 부여함
- 신청기업은 타당성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야 하며, 제공된 자료의 활용 및 이용에 동의하여야 함
- 신청기업은 타당성조사 이후 글로벌인프라펀드(GIF)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외건설특화펀드 등에서 투자하기로 결정할 경우,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해외건설특화펀드의 지분 인수 및 대출 등 참여를 허용하여야 함
- 신청기업은 타당성조사 이후 KIND에서 투자의향을 밝히는 경우 KIND의 참여를 우선 검토해야 하며, 타 투자자와 동등한 조건에서는 KIND의 참여에 우선권을 주어야 함

- 신청기업은 타당성조사 완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추가적인 사업 추진이 없거나 신청기업의 사정으로 더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해야 함
- 신청기업은 대상사업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일체 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며, KIND의 서류보완 요청에 대해 관련서류의 미보완 또는 미제출하는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함
- 대상사업 선정 및 타당성조사 수행기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, 신청기업은 KIND에서 지정한 기일에 참석하여 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함
- 사업이 선정된 경우, 신청기업은 해당사업의 개발완료 또는 포기 시까지 사업의 현행정보를 정기적(분기 1회 이상)으로 KIND에 제공하여야 함
- 신청기업이 본 유의사항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, 해당 기업은 추후 2년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세부적인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는 붙임 소정 양식을 참고하여야 함

[붙임 1]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평가기준표

[붙임 2]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평가기준표

[붙임 3]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지원 신청서(서식 제1호)

[붙임 4] 사업제안서(본 타당성조사 신청용)(서식 제2호)

[붙임 5] 사업제안서(예비 타당성조사 신청용)(서식 제3호)

[붙임 6] 서약서(서식 제4호)

[붙임 7] 타당성조사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(서식 제5호)

[붙임 8] 사업타당성조사 요청 내역서(서식 제6호)